

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154-01

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아름다운 이야기

| 청탁금지법 체감변화 우수사례집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아름다운 이야기

| 청탁금지법 체감변화 우수사례집 |



국민권익위원회

CONTENTS

STEP 01

청탁금지법으로 만들어가는 깨끗한 사회

01. 정성과 마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청탁금지법	6
02.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해결사 청탁금지법	8
03. 청탁금지법으로 되찾은 가족의 행복	10
04. 청탁금지법으로 가벼워진 어깨의 짐	12
05. 청탁금지법이 있어서 진짜 명절이다	14
06. 청탁금지법은 나의 좋은 핑곗거리	16
07. 소박한 음식이 코스요리보다 낫다	18
08. 청탁금지법으로 수월해 진 학부모와의 소통	20
09. 부정청탁의 불행한 결말	22
10. 청탁금지법으로 만들어가는 깨끗한 학교	24
11. 작은 변화가 만드는 깨끗한 대한민국	26
12. 청탁금지법 이전과 이후 함께 나누는 커피 한잔의 의미	28
13. 청탁금지법이 만들어낸 가족의 행복한 웃음소리	30
14. 회사생활의 즐거움을 선물해준 청탁금지법	32
15. 청탁금지법으로 우리 회사가 달라졌어요	34
16. 깨끗한 나라가 되는 전환점	36
17. 청탁금지법으로 화기에애한 학부모회	38
18. 청탁금지법으로 만들어진 참교육의 시작	40
19. 중소기업의 희망이 된 청탁금지법	42



STEP 02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

01. 민원인 내방 시 음료수 제공 관행 근절 고용노동부	46
02. 청탁금지법을 통한 공정한 계약업무 조달청	48
03. 직장 내 청렴문화 분위기 확산 울산광역시	50
04. 불어라 청렴바람 가득하라 청렴문화 경기 안산시	54
05. 소규모 학교 업무 개선 경북 교육청	60
06. 청탁금지법 덕분에 행복해진 나의 삶 국방기술품질원	62
07.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 한국전기안전공사	64
08.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한 관행적인 청탁 근절 인천국제공항공사	70
09. 청탁금지법이 '애정법'이 된 사유 국방기술품질원	74
10.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비정상적 관행 청산 부산교통공사	76
11. 청렴한 업무처리로 소통과 신뢰도 향상 한국철도공사	78
12. 청탁금지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82
13. 우선 진료 및 먼저 입원을 위한 금품수수 관행 근절 전북대학교병원	84
14. 청탁금지법으로 투명·공정한 학교 문화 조성 경북대학교	86



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아름다운 이야기



청탁금지법으로 만들어가는 깨끗한 사회

01. 정성과 마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청탁금지법	6
02.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해결사 청탁금지법	8
03. 청탁금지법으로 되찾은 가족의 행복	10
04. 청탁금지법으로 가벼워진 어깨의 짐	12
05. 청탁금지법이 있어서 진짜 명절이다	14
06. 청탁금지법은 나의 좋은 핑곗거리	16
07. 소박한 음식이 코스요리보다 낫다	18
08. 청탁금지법으로 수월해 진 학부모와의 소통	20
09. 부정청탁의 불행한 결말	22
10. 청탁금지법으로 만들어가는 깨끗한 학교	24
11. 작은 변화가 만드는 깨끗한 대한민국	26
12. 청탁금지법 이전과 이후 함께 나누는 커피 한잔의 의미	28
13. 청탁금지법이 만들어낸 가족의 행복한 웃음소리	30
14. 회사생활의 즐거움을 선물해준 청탁금지법	32
15. 청탁금지법으로 우리 회사가 달라졌어요	34
16. 깨끗한 나라가 되는 전환점	36
17. 청탁금지법으로 화기애애한 학부모회	38
18. 청탁금지법으로 만들어진 참교육의 시작	40
19. 중소기업의 희망이 된 청탁금지법	42

정성과 마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이전에 첫째들의 유치원 선생님께 고마움의 표시로 화장품이나 가벼운 선물들을 꼭 해왔던 학부모로서 늘 유치원 행사나 스승의 날이 고민스럽고, 다른 학부모들의 은근한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불편했었습니다. 학부모 상담을 가던 날 가벼운 주전부리라도 가져가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를 막는 중요한 법이자 물질적인 것보다
정성과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선생님 생신을 우연히 알게 돼서 아이와 함께 고민하다가 선물 대신 선생님에게 보여드릴 영상을 만들면 어떨까하고 유치원 인터넷 카페 사이트에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본 같은 반 엄마들까지 함께 동참하여 축하영상과 메시지가 릴레이로 이어졌어요. 선생님이 보시고는 정말 감동이라며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예전에 물질적인 것으로 선물로 드렸을 때는 좋아하는 하셔도 감동은 안 받으셨던 것 같은데, 마음을 전해드렸더니 진심으로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 뿌듯하더군요. 같은 반 학부모님들도 함께 동참해서 더욱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선생님께 전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를 막는 중요한 법이자 물질적인 것보다 정성과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에 앞서 인성을 배우는 유치원과 학교에서부터라도 청탁이나 촌지가 오고 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해결사 청탁금지법

초등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유치원생까지 무려 셋씩이나 되는 손주들을 돌보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손주들 키우는 할머니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딸 아이 둘 대신 외손주 셋을 키우는 것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힘든 일이지요. 관절염, 신경통에 하루도 몸이 안 아픈 날이 없지만 손주들의 재롱에 힘이 나기도 한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이니 잘 키워 보려고 애써보지만 그래도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더라고요. 특히나 늙은 할미가 젊은 선생님들의 선물을 마련하는 일은 참 머리가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웃 새댁들에게 의논도 하고, 또 손주들의 짝꿍 엄마에게 물어 보기도 하고, 그러다 안 되면 딸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짜증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스승의 날이나 입학식, 졸업식 때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던 것은 제가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고민을 할머니가 돼서도 해야 하니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특히, 막둥이 손자의 경우는 유독 발달이 늦고, 할머니가 키우니 더욱 선물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차라리 선생님이 속 시원하게 뭘 사달라고 항목이라도 써주시면 더 편하겠다 싶기도 했었지요.



“엄마! 이제 애들 선생님 선물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아니, 아무것도 드리면 안돼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서 이제 선물을 드리면, 법을 어기는 거니까 꼭 알고 계세요.”



지난해 어느 날, 큰 딸이 와서 웃으며 말하더군요. “엄마! 이제 애들 선생님 선물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아니, 아무것도 드리면 안돼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서 이제 선물을 드리면, 법을 어기는 거니까 꼭 알고 계세요.”

처음엔 사실 선생님들께 큰 선물도 아니고 작은 선물 드리는 것이 왜 법에 걸리는 건가? 말만 그렇지 그래도 우리 귀한 손자들을 돌봐 주시는 선생님들인데 선물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자들 친구의 엄마들도 하나같이 선생님께 이제 선물을 드리면 안 된다고 말해 주더라고요.

‘참,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구나!’하는 마음에 놀랐고, 이제 늙은 할미 걱정거리 하나 덜어서 기쁜 마음이 들었네요. 아이 셋 키우며 매년 몇 번씩 선생님께 ‘선물을 드려야 하나?’, ‘춘지를 드려야 하나?’라는 고민을 항상 했었고, 또 손자도 셋이나 키우면서 선생님 선물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많았는데 청탁금지법으로 큰 걱정거리 하나가 사라진 기분입니다.

청탁금지법이 무엇인지 자세히 모르는 할머니지만 올 입학식 날과 스승의 날에는 선생님 선물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니 그것만으로도 홀가분하네요.

수 십년을 이어 온 엄마들의 고민을 해결해준 청탁금지법.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에 엄마들, 특히 아이들을 대신 키워주고 있는 할머니들의 고민을 해결해 준 청탁금지법에 감사를 전하고 싶어 글을 남겨 봅니다.

청탁금지법으로 되찾은 가족의 행복

3살 어린 동생이 측량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측량일이 시청 측하고 많은 관계가 있는 일이죠. 동생 녀석이 1주일에 2~3일이 멀다하고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옵니다. 간혹 접대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듣고 있었지만, 젊은 아이라 할지라도 너무 자주 술을 마시니 병이라도 들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들곤 했었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시청 쪽 공사를 수주해야 하는데 동생이 모시고 있는 사장이 술을 잘 못 먹어 공무원들 접대를 할 때면 꼭 자기를 데리고 나가 대신 술을 먹게 한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엔 그게 진짜인지 아니, 진짜여도 별로 궁금해 하지 않았습시다. 술을 마시든 말든 간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술 마시고 들어온 날이면 항상 다음날은 오후 늦게까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취해 가지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나기도 했지만,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하지만, 올해 초 아버님이 지나친 음주로 간암 선고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B형 보균자였지만 그래도 술이 아버님 병세에 가속도를 붙인 것이죠. 하루는 날을 잡아 동생을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이 저렇게 돌아가셨으니 너도 술을 좀 줄여야 하지 않겠냐?'라고요. 동생 말이 간단하더군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이죠. 어이가 없었지만, 또한 맞는 말이기도 해서 듣고만 있었죠.



아직 결혼을 안 해 혼자 있는 것이 안쓰러웠는데,
주말이면 식구들과 같이 등산도 가는 등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다 보니 가족애가 더욱 커졌습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TV에 자주 나오더군요. 앞으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유심히 들어보니
우리 동생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더군요. '너희도 청탁금지법에 포함되냐?'라고 물어보니, '나야, 뭐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뭐,'라고 하더군요.

하για 월급쟁이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요.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뭔가가
달라지더군요. 먼저, 퇴근시간이 빨라지더군요. 어김없이 7시면 집에 들어와 저녁밥을 집에서
꼬박꼬박 먹고 있습니다.

둘째는 술을 먹지 않고 들어오니 주말에 온 식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거죠. 아직 결혼을 안 해
혼자 있는 것이 안쓰러웠는데, 주말이면 식구들과 같이 등산도 가는 등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다 보니
가족애가 더욱 커졌습니다.

셋째, 동생 녀석이 혈색이 좋아지더군요. 늘 술에 찌들어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출근하는 때가
 많았는데, 일찍 일어나 밥 먹고 출근하니 소위 말하는 얼굴의 때갈도 좋아지더군요. 아마 먼 곳에서
아버님이 조금은 안도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가지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분명한 거 같습니다. 분명히 이 법도 부작용이나 편법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무서워 시작도 못할 바에는 시행하고
나타나는 문제점을 더욱 보완해 나간다면 앞으로 더욱 좋은 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키라고 만든 법 누구나가 지키면 더 큰 보람과 대가로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으로 가벼워진 어깨의 짐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바로 학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솔직히 때 학기가 시작되면 초등학교 엄마들은 아주 분주해집니다. 어떤 선생님은 어떤 선물을 더 좋아하고, 또 어떤 아이들을 더 좋아하는지 서로의 정보를 주고 받느라고 정신이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워킹맘일 경우에는 이런 정보에 뒤지니 아무래도 아이들도 친구들보다 더 위축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누구네 엄마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국화차를 따로 선물해줬다느니... 또, 화분을 몇 개씩 들여놨다느니 하는데... 자신의 엄마는 회사 다닌다고 학교에 한 번 찾아오기도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신학기가 시작한 후 얼마 있으면 학부모와 선생님의 상담기간이 있는데 이때가 제일 정신없이 바쁘고 엄마들 마음 고생이 심할 때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대면상담이나 전화상담도 안 하고 싶지만 안한다고 할 수도 없고 꼭 해야 한다며 날짜와 시간을 정하라는 유인물이 오면 한숨부터 팍팍 납니다.

저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상담기간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갈팡질팡 하더라고요. 사실 상담기간에 선생님을 뵙기 위해서 교실에 가보면 교탁 위나 밑에 수북하게 쌓여 있는 선물들을 보면서 '내 건 이것보다 나은 건가?', '선생님이 좋아하시려나?', '너무 작은 걸 산 건 아닌가?' 등등 오만가지 생각을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로 학교에서는 수시로 일체의 물건도 돈도 받지 않는다는 공문이 왔고 이제는 음료수 한 병 들고 가지 않아도 당당하게 선생님과 상담하고 옵니다. 그리고, 교탁 위에도 누군가의 선물은 더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보니 어느 반 어느 선생님은 어떤 걸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모든 엄마들의 관심사죠. 그리고 교실에 상담 받으러 가면 선물들이 쌓여 있으니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사실 선물 바리바리 싸다주면서 우리 아이 잘 봐달라고 해도 아이가 말을 잘 안 듣고, 산만하고, 장난 잘 치는 개구쟁이라면 이러나저러나 야단 맞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선물 안 해도 아이가 처신을 잘하면 선생님도 별 말 안하고, 잘한다고 칭찬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뭐 하나라도 더 신경 써주고 마음 써주는 학부모의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지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요. 저도 사람이니 이해는 하지만 매 학기 초마다 이런 일들에 신경을 쓰다보면 솔직히 다른 일들은 뒷전이 됩니다.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다른 엄마들이랑 안보이게 이런 일로 경쟁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로 학교에서는 수시로 일체의 물건도 돈도 받지 않는다는 공문이 왔고 이제는 음료수 한 병 들고 가지 않아도 당당하게 선생님과 상담하고 옵니다. 그리고, 교탁 위에도 누군가의 선물은 더이상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되니 조금 더 학교와 선생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더 이상 부담스러운 상담기간이 아니라 우리 아이에 대해서 선생님과 좀 더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아이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점(알레르기나 병증 등)에 대해서 마음 편히 말할 수 있어 너무 좋아요.

청탁금지법으로 대한민국 엄마들의 어깨의 짐이 조금은 더 가벼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법과 제도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대한민국 엄마들의 짐이 조금씩 덜어져 다들 어깨 펴고 사는 날이 하루 빨리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있어서 진짜 명절이다

결 혼하고 첫 명절이었던 설날.

명절이란 것이 그저 가족끼리 모이는 날인 줄만 알았던 제게 시댁의 명절은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설날을 앞 둔 이십여 일 전부터 저와 남편은 퇴근하기가 무섭게 시댁으로 출근을 해야 했고, 마트며 백화점, 인터넷을 돌고 도느라 새벽녘에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바리바리 구매한 과일상자부터 한우세트, 홍삼, 상품권 등등 100여 가지 정도의 선물을 조금이나마 싸게 구매해 포장하고, 택배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차로 직접 배달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보니 막상 설날에는 남편과 저 둘 다 몸살을 앓느라 친정집에는 내려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30여 년 인쇄소를 운영해 오신 아버님의 거래처에 보낼 선물들 때문에 매해 명절을 제대로 쉬지 못했고, 저는 그것이 섭섭하기도 하고, 또 처음엔 이해도 되지 않아 아버님께 자초지종을 여쭙어 보았습니다.

“아버님! 일을 해주고 정당하게 돈을 받는 것인데 왜 이리 선물을 많이 돌려야 하죠?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인사하는 것이라면 적당한 선물세트를 골라 한곳에서 대량 주문하면 편할텐데 말이죠.”

아버님은 헛기침을 하시며, “나라고 매번 명절마다 이려고 싶겠니. 새아가! 하지만, 관행이란 것이 다 그런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괜히 다 속상하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드디어 명절 같은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 설날엔 다른 사람들에게 보낼 선물을 사서 포장하고, 배달하느라 다리품을 파는 고생을 하지 않아도 돼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더욱 행복했던 건 시아버님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었죠.

인쇄소의 특성상 거래처에서 대량 주문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거의 매출의 90%가 넘으니 일을 많이 주는 곳에는 값비싼 선물, 그리고 조금 주는 곳에는 그에 맞는 선물을 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아버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그냥 그래야 하는구나’하고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의 인쇄소 일감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시아버님은 공장 운영자체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도, 명절마다 선물을 사서 보내는 일은 끝나지 않았고, 아버님은 ‘휴~’하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다들 그리하니 나 혼자 안 할 수도 없고, 선물을 보낼 바엔 공장 문을 닫는 것이 나을 듯하구나.”

인쇄소 일감이 줄어들었지만 다시 일감을 줄 수도 있는 거래처들. 관행적으로 해오던 명절 선물을 하지 않아 거래처를 빼앗길까봐 노심초사하시던 아버님의 모습이 어떤 날은 서글프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드디어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고, 우리 가족은 드디어 명절 같은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 설날엔 다른 사람들에게 보낼 선물을 사서 포장하고, 배달하느라 다리품을 파는 고생을 하지 않아도 돼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더욱 행복했던 건 시아버님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었죠.

“일거리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올해 설날이 가장 마음 편한 설날이구나. 하하하!”



도란도란 떡국을 만들어 먹고 가족들 끼리 여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2017년의 설날은 제가 시집와서 맞이해 보는 진짜 명절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관행에서 시아버님과 우리 가족을 벗어나게 해준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은 우리 가족에게 행복하고 따뜻한 진짜 명절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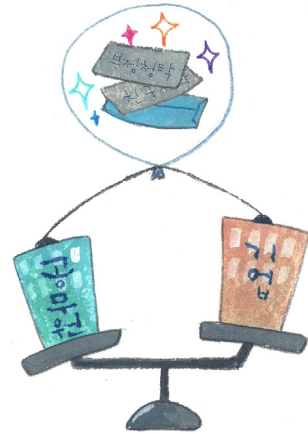
청탁금지법은 나의 좋은 핑곗거리

보통 부정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금품수수는 이권이 연루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과 기업가 사이가 가장 흔한 경우이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정직하고 청렴한 공무원, 기업가, 직장인이라도 뿌리칠 수 없는 아주 곤란한 청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소에 거래관계에 있던 수 십년 지기 지인이나 거래처 또는 친구의 부정청탁입니다. 특히, 매일 업무상 마주쳐야 하는 관계자의 청탁을 거절하면, 앞으로 계속 보면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청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부정한 청탁이지만 들어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필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곤란한 청탁을 들어주지는 않더라도 본의 아니게 받아 본 경우는 한두 번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청탁금지법'이라는 아주 좋은 핑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자주 마주쳐야 하는 사람으로부터 아주 곤란한 청탁이 들어온다면 "청탁금지법 몰라 밥줄 끊기면 책임질꺼야?", "해주고 싶어도 청탁금지법 생겨서 요즘 힘들어 감사도 심하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소위 청탁금지법 핑계를 대면서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는 사람에게 받는 청탁은 안 들어주면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것이고, 들어주자니 불법이고, 이럴 땐 청탁금지법 핑계를 대면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핑계도 통하지 않는 지독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주사를 맞고, 철저히 건강관리를 하듯이 지인들과 관계를 맺을 때 술자리이든 커피타임이든 일상대화에서든 청탁금지법, 또는 관련 문제를 가끔 화제로 꺼냅니다. "요즘 청탁금지법 때문에 어디 청탁하는 것도 이제는 예전 말이야 세상이 바뀌었네.", "지인 간에 곤란한 청탁을 하는 건, 참 문제야", "친구나 지인이 어려우면 십시일반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적극 도와줄 수 있는데, 부정청탁을 한다면, 난 인연을

아는 사람에게 받는 청탁은 안 들어주면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것이고,
 들어주자니 불법이고, 이럴 땐 청탁금지법 핑계를 대면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끓을 거야."라는 식으로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 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를 불문하고, 부정청탁은 하지도 들어주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인들에게 각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일정금액을 주고받는 것이 범죄라기보다 관례나 미덕쯤으로 여겨지곤 했고, 필자 또한 그런 관념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위 청탁금지법이 유명세를 얻은 이후, 자연스럽게 '이제 세상이 바뀌었구나!', '돈을 주고 받는 것은 더 이상 미덕이나 관례가 아닌 범죄구나!'라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소박한 음식이 코스요리보다 낫다

"네, 제가 시간이 안 돼서요, 네, 네, 다음에 기회되면, 준비해 볼게요."

꽤 긴 시간 이어진 통화를 어렵게 끝내고 작성하던 기사에 눈을 돌렸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강연 제의를 거절하고 나면 진이 빠집니다. 의뢰하는 쪽에서도 부담스럽겠지만, 그런 의뢰를 거절하는 쪽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홍보용 보도자료도 내고, 광고도 구매하는 것은 기본. 신제품이 나왔을 때, 혹은 투자가 필요할 때, 기업체는 기자에게 강연 의뢰를 하고는 합니다. 회사 직원들에게 별 연관성도 없는 강연을 듣게 하고 생각보다 과한 강연비를 챙겨주고,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어서 나는 항상 부담스러웠습니다.

경제 관련 기자로 해당 분야에 대해서 국제 경제, 국내 경제와 연관 지어서 강연을 하려면 할 수가 있지만, 그걸 관심도 없고, 연관성도 없는 청중들 앞에서 해야한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자괴감이 들게 합니다.

물론, 공짜는 없습니다. 강연비로 받는 과한 금액은 자연스레 해당 기업에 대한 겉치레 기사들로 답이 되어야 하고, 날카롭게 비판이나 분석을 하기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불필요한 강의를 묵인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대학생들이 감사하다며 건네는 커피 한 잔, 모교 후배들이 강연 잘 들었다고 고맙다며 주는 캔 음료 하나. 이런 소박하고 작은 답례품이 더 값지고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이런 관행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말 필요한 곳이나 관심이 있는 곳에서만 강연 의뢰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졸업한 모교에서 기자나 언론인에 관심이 있는 후배들에게 강연을 해달라는 의뢰라던가, 경제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모임에서 국제 경제에 대한 강연을 해달라는 의뢰 등이 그것입니다. 물론, 이런 의뢰들은 강연비를 받지 않고 재능기부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학생들이 감사하다며 건네는 커피 한 잔, 모교 후배들이 강연 잘 들었다고 고맙다며 주는 캔 음료 하나. 이런 소박하고 작은 답례품이 더 값지고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1인 당 수만 원짜리 코스음식보다, 후배들과 먹는 학교식당 급식이, 대학생들과 함께 토론하며 먹는 치맥이 더 맛있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에 언론인이 포함된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업종이 포함되고, 예외 규정이 생기지 않고, 원칙이 고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 수월해 진 학부모와의 소통

경기도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남자 교사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나서 학교에서 학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진 느낌입니다. 10여 년 전에 처음 학교로 발령받을 때에도 고액의 금품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주는 경우에도 모두 다시 돌려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움의 표시로 주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다시 돌려보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어떤 학부모님들은 아이를 시켜서 전달하거나 빈 교실 책상 위에 올려두고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럴 때는 다시 정중한 거절의 편지와 함께 아이들 편에 선물을 돌려보냈습니다. 특히, 상담기간이 되면 학부모님들이 그냥 맨손으로 오기가 뭐하다며, 음료나 케이크를 사오시는데 사실 그런 것도 교사 입장에서는 받기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선물 받기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기가 죄송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학부모님들도 이걸 다시 가지고 갈수도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실 때면 난처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청탁금지법이 생기고 나서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학교에 찾아오시는 부모님들도 두 손을 가볍게 오셔서 교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편하게 대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학부모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선생님 정말 커피하나도 못 드리나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청탁금지법 때문에 조그마한 금품이나 음료도 받지 못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대답해드렸는데 그래도 법이라는 근거가 있어서 거부하기도 한결 쉽고 상대방도 쉽게 납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학부모님 상담기간에는 제가 커피를 사놓고 상담하러 오실 때
한 잔씩 타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부담 없고,
교사도 부담 없는 최고의 방법을 나름 찾은 것입니다.



이제는 학부모님 상담기간에는 제가 커피를 사놓고 상담하러 오실 때 한 잔씩 타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부담 없고, 교사도 부담 없는 최고의 방법을 나름 찾은 것입니다. 모든 교사들이 요즘 느끼는 것이지만 청탁금지법으로 오히려 학부모님과의 소통이나 대화에 있어서 훨씬 수월해진 요즘인 것 같습니다.



부정청탁의 불행한 결말

지금은 은퇴를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거든요. 제가 일하는 직장은 공기업이었는데 다양한 공사나 수주가 많은 곳이라서 솔직히 옛날부터 부정청탁이 참 많았던 곳입니다. 위낙에 관련되는 하청업체들도 많고 공사나 수주의 금액도 다양하고 많아서 일일이 관리하기가 어려울 정도였고, 수시로 큰 공사를 할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하는 하청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공사계획이 나오거나 별도의 계획이 있나 싶어서 하청업체 관련 사장이나 직원들이 수시로 전화를 하고 찾아오곤 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도 대개 큰 공사는 온비드를 통해서 하거나 혹은 직접 공사 공고를 내고 여러 참여 업체들이 직접 참여해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출한 업체와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했기에 이런 청탁이 해당되는 곳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그런 청탁에 너무 익숙해져 있던 하청업체들은 당연히 그 공사와 관련된 부서나 부서장 혹은 관련 직원들에게 일명 "로비"를 하려고 하더군요. 그러던 차에 새롭게 공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하청업체 사장이 제게 전화를 했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깐 그건 비밀이라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딱 봐도 우리 회사 내부관계자와 관련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필요를 못 느끼고 **"더 이상 이런 전화는 안 받겠습니다."**하고 정중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그 하청업체 사장은 저와 같은 부서의 직원은 물론이고 부서장님에게까지 따로 연락을 하고 뭔가 알아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급기야 부서장님이 회의실에 모여서 "00산업은 이번 입찰에서 제외하게 되었으니 다들 잘 숙지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음부터 이런 부정한 청탁이나 불편한

괜히 아는 척해서 혹여 그 사람에게 편의를 준 것으로 비취질까봐
항시 조심해야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서
무엇보다 편하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네요.

이야기를 하는 업체나 사람이 있다면 바로 건의하면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줄 터이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분명 튼튼한 기업이었고 나름 장점도 많은 업체라서 다른 공사들을 많이 수주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장은 잘못된 생각과 대처로 오히려 회사를 더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이 다른 업체들과 기관에게도 소문이 났는지 그 뒤로 그런 은밀한 거래나 뒷돈을 이야기하는 업체도, 사람도 없어서 우리 회사 직원들은 더욱 안심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거래나 뒷돈 받아봤자 평생 발 못 뻗고 자는 마음의 짐 같은 돈이고, 그런 돈일수록 더 덧없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로 우리 회사는, 그리고 우리 부서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공사나 수주 관련 공고가 나면 다들 말은 안했지만, 관련 업체나 사람들에게 엄청 들들 볶였거든요. 누군가는 참 호강에 겨운 소리라고 할 지 모르지만 막상 당해 보세요. 그런 말이 안 나올 겁니다. 나도 모르게 말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항상 걱정해야 하고 말 한마디 편하게 못하고, 괜히 아는 척해서 혹여 그 사람에게 편의를 준 것으로 비취질까봐 항시 조심해야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서 무엇보다 편하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네요.



청탁금지법으로 만들어 가는 깨끗한 학교

안녕하세요.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데요. 며칠 전 우리 아이가 학습태도와 관련해 학부모 상담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받아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이라 많이 떨리더군요.

우선, 요즘 교실에 학생 수가 우리 때와 비교해서 많이 적더군요. 난방시설도 안에 잘 갖춰져 있고요. 식수대도 바로 옆에 있어 누구나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게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때랑 많이 달라져서 기분이 새롭고, 발전된 학교의 모습을 봐서 기분이 흐뭇해졌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 담임 선생님이 계신 교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반갑고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시더군요. 그리고, 우리때와 다르게 여자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좀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 반 빈 교실에 들어가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학습태도가 좀 불량하고, 선생님 말씀 도중에 이상한 얘기를 막한다고 하더군요. 좀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훈육과 교육방식을 경청하고 난 뒤, 올바른 가정교육과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우리아이들의 미래에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마지막 말씀을 듣고 인사하고 가려다가 예전에 선생님께 드리려고 했으나 청탁금지법 때문에 고민하면서 집에 보관한 선물 생각이 나서 혹시나 하고 “선생님, 요즘도 선물을 드리는 분들도 있나요?”라고 물어보니 **이제는 학교에서 어떠한 선물이나 금품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선물을 받으면 다른 아이들에게 차별하는 마음이 은연 중에 생겨서 선생으로서 가치를 이행하기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결국 집에 있던 선물은 제가 그냥 쓰게 되었습니다.

하긴 선생님도 사람인데 누구한테 선물 같은 거 받으면 그 애한테는 더 잘 해 줄테고 상대적으로 나머지 아이들에게 차별의식을 심어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청탁금지법이 생겨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법 이전에 선생님의 가치를 몸소 보여 주시는 것에 감동받았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다른 선생님들도 조그마한 선물도 전혀 받지 않으신다고 하시더군요. 한편으로는, 너무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우리아이들의 미래에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청탁금지법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깨끗한 학교, 공정한 학교,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 모습에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작은 변화가 만드는 깨끗한 대한민국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제가 근무하는 도서관에도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도서관에 개설하는 강의 등에 있어서 한 강사 선생님께서는 수업 중에 자신이 가꾼 농산물이라며, 각종 과일과 고구마 등의 농작물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럼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담당자들은 받아두었다가 직원들과 나눠 먹을 수밖에 없었죠. 마음이 담긴 감사의 선물을 썩혀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밥 한 끼,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조심스럽게 되자 저희도 더 이상 일체의 성의 표시도 받지 않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고유문화인 정이 퇴색되는 것 같아 적응이 되지 않았지만, 곧 사정을 이해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희도 그런 선물을 받고 나면 추후 새로운 강좌 개설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정 때문에 그분을 또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었어요.** 또, 종강 시에는 식사 대접이나 기념품 등도 제공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이어졌었거든요. 특히, 더 좋은 강의를 위해 담당자로서의 당연한 요구 등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강사와 담당자 사이에 물건이라는 매개가 사라지고 나니, 혹시 강좌에 문제가 생겨도 업무적인 측면에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 참 다행이에요! 생각해보니 작은 성의 표현이 또 다른 성의로 이어지고, 결국은 '업무처리에 있어서 사적인 감정으로 발전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였구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작은 대접이 결국은 큰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니 청탁금지법 시행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있어서 참으로 큰 일을 이룬 것이라 여겨집니다.

생각해보니 작은 성의 표현이 또 다른 성의로 이어지고,
결국은 '업무처리에 있어서 사적인 감정으로 발전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였구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의 학연, 지연, 인맥 문화는 어서 빨리 타파되어야 할 구습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악습들이 어서 빨리 뿌리 뽑혀 더 맑고, 깨끗한 사회로 발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청탁금지법 이전과 이후 함께 나누는 커피 한 잔의 의미

청탁금지법 이전과 이후 함께 나누는 커피 한 잔의 의미는

“오늘 우리 과장님 저녁 드시자고 하는데 가도 되는 건가요?”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단풍철을 맞아 체육행사를 가면서 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저녁식사가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입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변화와 이슈를 가져올 거라고 예상되는 청탁금지법이 드디어 시행되었기 때문이지요.

법의 시행 초기 2016년 가을에는 일부 중앙 **정부청사에서는 구내식당이 갑자기 불어난 인원으로 대박(?)인** 적도 있었다고 하는 소식도 언론에 자주 보도되곤 했습니다. 우리 직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인근 고급 식당가는 한산해지고, 부담 없이 즐기던 계약업체와의 식사자리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내심 법 시행 후 경조사나 외식 등에 부담을 가졌던 주변의 동료들은 오히려 이 법의 시행이 정말 잘 되었다는 분위기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웬만한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들의 밥값으로 점심 식사를 대신하는 행태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상사들이 점심을 사주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웬만한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들의 밥값으로 점심 식사를
대신하는 분위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상사들이 점심을
사주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청탁금지법이 없어도 양심껏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 시행 이전이나 이후나 별로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이 있거나 없거나 아무 거리낄 것 없는 나는 오랜만에 오늘은
잊었던 선배님과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아름답게 핀 마커스 꽃 화분 하나를 승진한 후배직원에게
보내보렵니다. 그리고, 군대 분위기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면 활짝 웃는 휴가 나온 아들과 함께 기분
좋게 영화 한 편 보고, 고운 매화 향기 맡으러 인근 둘레길이라도 걸어보렵니다.



청탁금지법이 만들어낸 가족의 행복한 웃음소리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30대 맞벌이 가장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주변 직원들의 반응은 "시행되어 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어?", "괜히 머리만 아프게 하는 구만..." 등 모두 법 시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법이 시행되고 현재 우리 직장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변화였습니다. 평일에는 항상 업무 관련자들과 저녁식사로 인해 가족들과의 저녁식사 약속은 꿈도 못 꾸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 아내도 야근으로 늦게 퇴근을 할 때면, 4살 먹은 아들 녀석을 어떻게 할지 몰라 부모님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접대가 다 끝난 후에야 저는 저녁 늦게 부모님 집에 들러 자고 있는 아들을 업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식사 접대 빈도수가 크게 감소하여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식사 시간이 자연스레 증가했습니다. 덕분에 아들 녀석과 대화의 시간이 부족 늘고 부부관계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어 둘째 낳을 생각은 하지도 못했는데, 최근에는 둘째를 낳을까 하는 계획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가 큰 이슈잖아요. 청탁금지법이 청렴도 향상은 물론 가족친화 효과까지 있네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삶의 질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가족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커져 갈수록 국가의 청렴도도 쑥쑥 커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청탁금지법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식사 접대 빈도수가 크게 감소하여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식사 시간이 자연스럽게 증가했습니다.
덕분에 아들 녀석과 대화의 시간이 부쩍 늘고 부부관계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회사생활의 즐거움을 선물해준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TV뉴스에도 나오고 라디오에서도 떠들어대고 심지어는 각종 오락 프로그램이나 코미디 프로그램에서까지 패러디를 해대며 떠들썩한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소에 회사에서 딱히 청탁을 하는 일도 청탁을 받는 일도 없었지만, 이 법이 내 생활에 무슨 변화를 주겠나 싶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는데 일부러 법을 안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몰라서 위법을 행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교육과 당부를 계속 해주었습니다.



서로 부담 없고 아쉽지 않은 상하관계, 동료관계, 협력업체와의
관계들이 회사생활을 더욱 즐겁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시나브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법과 이 법을 바라보는 사회현상 덕에 나는 평소에 얼마나 청렴했던가, 우리 회사에서는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소소하다 생각되는 부정한 청탁이 오가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랜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사에게 대접을 하거나 작은 선물을 하는 일, 업무와 관련된 업체가 식사시간 언저리에 방문했을 때 자연스레 동행하여 식사하는 일, 조금 더 친하다고 생각되는 업무관계에 느슨한 처리 절차를 진행한 적은 없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일부러, 고의로 그러하지는 않았겠지만 오랜 습관, 조직에서는 관습이라 부르는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은 습관에 나도 모르게 물들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회사의 문화는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저도 모를 청탁금지법의 어느 조항을 위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농담 삼아 이야기하며, 각자 먹은 식사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물론, 서로 친분관계를 내세워 처리하던 일들은 점차 사라지고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불편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서로 부담 없고 아쉽지 않은 상하관계, 동료관계, 협력업체와의 관계들이 회사생활을 더욱 즐겁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시나브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도 청탁금지법은 본래 누구나 알고 있던 부정청탁을 금하는 것보다도 더 나아가 누구도 몰랐던 관습을 고치고, 그것이 건전한 문화로 정착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려 했던 것이라는 점을 지금 나처럼 믿게 되지 않을까요?

청탁금지법으로 우리 회사가 달라졌어요

저는 작은 중소기업의 총무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관리와 비품관리부터 때로는 외부접대까지 하는 일의 스펙트럼이 넓지요. 이걸 저희 회사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명절에 외부 협력사나 원청업체, 그리고 저희 회사 직원들에게 돌릴 선물을 마련하는 것도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동안은 원청업체와 외부 협력사에는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스팸이나 참치, 혹은 비누 선물세트로 아예 선물 종류가 정해져 있었어요. 특히, 원청업체와 외부협력사에 전해지는 백화점 상품권은 꽤나 부담이 되는 액수이기도 했고요.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에게나 해당되는 것인 줄로만 생각했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아서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저희 회사는 제조업쪽이고, 공무원들이나 기자들과는 접점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 분들과 만나거나 할 일이 거의 없는데도 원청업체 쪽에서 청탁금지법에 맞게 우리도 기존의 관행을 바꾸자는 협조문이 전해졌거든요. 원청업체에 관례적으로 해오던 명절인사를 하지 마시라는 말에 사장님이 정말이냐고 원청업체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다시 물어볼 정도였어요.

원청업체 쪽에서 그렇게 나오니 저희로서는 '땡큐'였고요. 주변 협력사들도 다들 그게 좋다는 반응이라서 올해는 원청업체와 협력사에 가는 백화점 상품권 구매를 안했어요. 대신 사장님께서 직원들에게 명절 보너스를 조금(몇 만원 정도) 더 주셨답니다.

그뿐 만이 아니라 올해부터는 아예 접대도 간소화되었어요. 원청업체 쪽에서 접대는 간단한 식사만 하는 것으로 정했거든요. 간단히 저녁식사만, 그것도 예전처럼 1인 당 10만 원이 넘는 초밥이나 횡집, 한우구이 집이 아니라 2만 원 이하의 식사를 하는 것으로 자체 방침이 정해졌대요. 그나마도 원청업체 직원이 저희 하청업체 직원들의 밥을 사주는 일이 더 늘었고요.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에게나 해당되는 것인 줄로만 생각했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아서 대환영입니다.

깨끗한 나라가 되는 전환점

저는 7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다 보면 한쪽은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소홀히 되는 한쪽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가정생활과 아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아이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등원과 하원 시 잠깐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유치원을 방문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참석을 요구하는 참여수업, 오리엔테이션, 상담 등은 평일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전화로만 간단히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간혹, 주변의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의 적응과 생활을 위해 종종 유치원을 방문해서 선생님과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아이 생활에 너무 소홀한 것 같아 선생님들에게 매번 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먹고 유치원 방문 시와 스승의 날 등에는 미안함 마음에 두 손 가득히 간식을 준비해 가곤 합니다. 작은 간식이라도 준비하는 것은 **우리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손길이 더 가길 바라는 청탁**의 의미입니다.



어쩌면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부정청탁 금지나 금품의 제공이 사라져서 조금 더 청렴한 세상이 되고, 이를 토대로 좀 더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꿈꿔봅니다.



그러던 중 작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유치원도 대상기관이 된다는 소식과 음료나 간단한 간식조차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저를 무척 당황스럽게 하였습니다. 학부모와 선생님과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이 생일 때와 반 아이들과 선생님의 간식 제공 여부에 대해 유치원과 기관에 묻기도 하며, 많이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유치원에서 제도와 법을 설명하면서 간식 제공을 거부하였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주었습니다. 저 또한 방문 시에 미안함을 표현하기 위해 준비했던 간식은 버리고 좀 더 편하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 것이 아닌 모두가 주고 받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 너무나 편하게 된 것입니다. 법이 갑자기 시행되고 그로 인해 사례의 경우 많이 부족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았지만 점점 사례들이 쌓여가면서 그 기준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부정청탁이나 금품의 제공이 사라져서 조금 더 청렴한 세상이 되고, 이를 토대로 좀 더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꿈꿔봅니다.

기존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학교 등은 깨끗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이나 비리, 청탁이 난무하는 곳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깨끗한 나라가 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탁금지법으로 화기애애한 학부모회

저에게는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있습니다.

이번에 학급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요. 아이가 회장이 되어 기뻐하면서도 기쁜 마음 뒤에는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예전부터 아이가 학급 회장(반장)이 되면 엄마는 으레 반의 대표가 되어 학부모회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럼, 순수한 마음과는 다르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께 소풍 때 도시락 싸드리기**. 학부모회 엄마들끼리 돈을 각출하여 학교에 무언가를 기증하는 행위 등 솔직히 그런 것들 때문에 겁이 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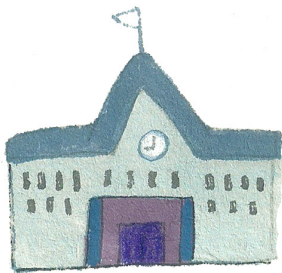


학교 대표인 어머니님 또한 우리 앞으로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 순수한 마음과 정직한 행동으로 학교와
아이들을 위해 힘쓰자고 하시더라고요.



지난주 목요일 학교에서 학부모 총회가 개최되었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학교를 찾았습니다. 선생님과 인사가 끝나고 저는 자연스레 반의 대표 엄마가 되어 학부모회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담임선생님을 비롯하여 학부모회 담당 선생님께서 청탁금지법으로 인하여 일체 선물이나 도시락, 심지어 음료수까지 안 된다고 하시며, 괜히 잘한다고 어머니들끼리 무언가 준비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학부모회 엄마들끼리 모임이 이어졌고, 학교 대표인 어머니님 또한 우리 앞으로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 순수한 마음과 정직한 행동으로 학교와 아이들을 위해 힘쓰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걱정했던 마음은 안도의 마음으로 바뀌었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학교 총회 모습 또한 부담감 없이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법률이 시행되었더라면, 많은 학부모들이 더 편하게 학교 활동에 임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동안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워 학교 활동을 꺼려했던 어머니들에게 더없이 행복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꼭 청탁금지법이 잘 정착하여 부정청탁이 없는 깨끗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 만들어진 참교육의 시작

저는 자폐증을 가진 아들을 키우는 장애 부모입니다. 이제 아들은 20살이 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아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에는 **촌지를 주는 것이 관행인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만 촌지를 주지 않으면 우리 아들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항상 마음을 졸이며, 아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촌지금지법이 생긴 후에도 체육대회 때 돈을 걷는 것이나, 스승의 날 선생님에게 드릴 꽃을 준비하기 위해 학급비를 걷는 것은 관행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면담을 갈 때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 항상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러한 부담이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를 더욱 멀어지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아들의 졸업식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마음 편하게 참석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음료수 하나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먼저 가정통신문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아들의 졸업식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마음 편하게 참석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음료수 하나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먼저 가정통신문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전공과에 입학을 하여서 입학식에 갔을 때는 학교에서 입학 선물로 조그만 상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준비를 해주시니 서로 불편하지도 않고 오히려 정이
느껴졌습니다.

서로 불편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참교육의 시작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소 선생님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와중에도 이렇게 조그마한 부분까지 부모들을 배려해주시니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희망이 된 청탁금지법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취업에 성공한 터였기에 감사한 마음이었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회사에 입사해서 사수에게 받은 첫 업무는 바로 거래처의 직원과 밥을 먹고 또 선물 등을 사주는 일이었습니다. 선배는 상품을 잘 만드는 일보다 판로가 중요하다고 말해주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신입사원인 저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업계의 관례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배의 수첩에는 가족들의 생일이 아닌 거래처 직원들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혹은 돌잔치까지 참석한 메모와 선물이면 선물, 상품권이면 상품권, 밥값 등등의 지출 내역이 빼곡히 적어져 있었고, 저 또한 영업일을 하면서 수첩을 하나 마련해야 했습니다. 영업일이 사람을 접대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을 설명하고 이야기 하는 시간보다 사람을 만나 술을 마시고, 밥을 먹고 대접을 해야 하는 일이 주 업무가 되다 보니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회사의 직원들이 정말 성실하게 만든 좋은 제품들이 제품의 품질보다는 영업사원의 접대로 판매 여부가 가려지는 현실이 너무 싫었지만 관례라는 것을 저 혼자 어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계약을 따기 위해서 장례식엔 얼마를 내야하고, 또 계약을 따고 나서는 어떤 접대를 해야 하는지 정도까지 매뉴얼로 정해져 있던 관례는 우리 회사는 물론, 거의 모든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때도 있었지만 직원인 제가 거스를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답답했고 화도 났지만 업계의 관행에 저도 익숙해져 갔고 나중에는 그 관례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실력으로 승부하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주었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할 맛을 나게 해준
법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양심이 찢리기도 했고, 사회가 그리고 회사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하곤 했지만 대부분은 모두 포기하고 관례에 따르게 되는 것이 힘없는 직장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부모님 생신은 잊어도 거래처 직원의 생일은 챙겨야 하고, 명절날 가까운 친지 분들에게 인사는 못 드려도 거래처엔 선물을 보내야 했던 몇 년. 선물이 너무 검소한 거 아니냐는 말을 듣던 날이나 다른 거래처에선 뭘 주더라, 넌지시 이야기를 꺼내는 날에는 화가 나서 회사를 관두고 싶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나서 지금은 정말 일할 맛이 나는 회사가 된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계속 받아 온 사람들이 법이 무서워 혹은 법을 지키기 위해 선물이나 접대를 받지 않는다고 먼저 말하는 사회가 되었으니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은 조금 더 살만해진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주니까 눈치를 보면서 무엇인가를 주고, 또 남들도 받으니까 나도 받으면 뭐 어때 하는 식의 오래된 관례들이 청탁금지법으로 눈에 띄게 달라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식사와 술, 선물 등으로 접대하는 대신 이제 정말 회사의 실력과 제품의 품질로 승부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일하는데 책임감이 생기고 어깨가 무거워 짐도 느낍니다.

뿌리 깊은 관행! 사실 오래되고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던 관례들은 개인 또는 한 회사가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주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양심선언**을 하는 순간 어쩌면 도태되고 밀려날 수도 있는 문제이니 말입니다. 특히, 많지 않은 업체와 거래를 하며 회사를 운영하는 작은 기업일수록 관례에 따르지 않으면 제품을 판매하거나 일을 따지 못할까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관례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공무원이나 대기업들에게도 중요한 법이겠지만 작은 중소기업엔 희망의 불씨가 되어 준 법입니다. 실력으로 승부하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주었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할 맛이 나게 해준 법이 되었습니다.

청탁이 없어진 사회! 청탁금지법은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와 꿈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아름다운 이야기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

01. 민원인 내방 시 음료수 제공 관행 근절 (고용노동부)	46
02. 청탁금지법을 통한 공정한 계약업무 (조달청)	48
03. 직장 내 청렴문화 분위기 확산 (울산광역시)	50
04. 불어라 청렴바람 가득하라 청렴문화 (경기 안산시)	54
05. 소규모 학교 업무 개선 (경북 교육청)	60
06. 청탁금지법 덕분에 행복해진 나의 삶 (국방기술품질원)	62
07.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 (한국전기안전공사)	64
08.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한 관행적인 청탁 근절 (인천국제공항공사)	70
09. 청탁금지법이 '애정법'이 된 사유 (국방기술품질원)	74
10.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비정상적 관행 청산 (부산교통공사)	76
11. 청렴한 업무처리로 소통과 신뢰도 향상 (한국철도공사)	78
12. 청탁금지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82
13. 우선 진료 및 먼저 입원을 위한 금품수수 관행 근절 (전북대학교병원)	84
14. 청탁금지법으로 투명·공정한 학교 문화 조성 (경북대학교)	86

민원인 내방 시 음료수 제공 관행 근절 | 고용노동부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나비효과처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사회에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도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부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진정서를 제출하면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들이 사건을 조사하여 체불임금을 받도록 도와주거나, 사업주가 끝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사법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은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러 노동청을 방문할 때 또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평생 처음 조사를 받으러 올 때 떨리는 마음에 빈손으로 오기 미안해서 비타민 음료 등 음료수를 사가지고 오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지곤 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들이 거절도 해보고 가져가시라고 해도 민원인 중엔 왜 내 것만 안 받느냐며 화를 내는 분도 계시고 또는 어르신들이 가져온 것은 거절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많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나서 민원인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민원인이 제공하는 것은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허용되지 않으며, 선물을 주고 받는 경우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면 대부분 이해를 하고 가져오신 음료수 등을 도로 가져 가셨습니다. 또한 청사 정문에 음료수 등 선물을 보관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내를 한 결과, 이제는 공무원에게 음료수 등을 사오는 민원인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민원인들을 설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민원 창구에서는 아직까지 음료수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근로감독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민원인이 제공하는 것은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허용되지 않으며, 선물을 주고 받는 경우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근로자들에게 음료수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가 깨끗해지기 위한 시발점**이 되어 공직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를 좀 더 희망적인 사회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청탁금지법을 통한 공정한 계약업무 | 조달청

우리 청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계약입니다.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있어야 하고 법과 규정, 지침 등에 따라 상대방, 즉 계약자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거절하기 어려운 청탁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행적인 업무도 개선되었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만남의 자리도, 부담감도 줄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인한 빈번한 만남이 자칫 업무적인 일과 연관되면 마음이 불편한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한편으로는 모임의 참석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만남이 줄어들면서 저녁을 함께하는 생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는 근무시간 내에 사무실 내 회의실을 이용하다보니 부담감도 줄었습니다.

둘째, 부정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퇴직자, 선·후배, 친구 등 지인으로부터 특정한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문의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관련 내용이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는 명확하게 거절이 가능하고 또한 그에 대한 취지를 알려주면 공감을 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조성되었고 불필요한 응대가 줄어들어 업무의 효율성이 올라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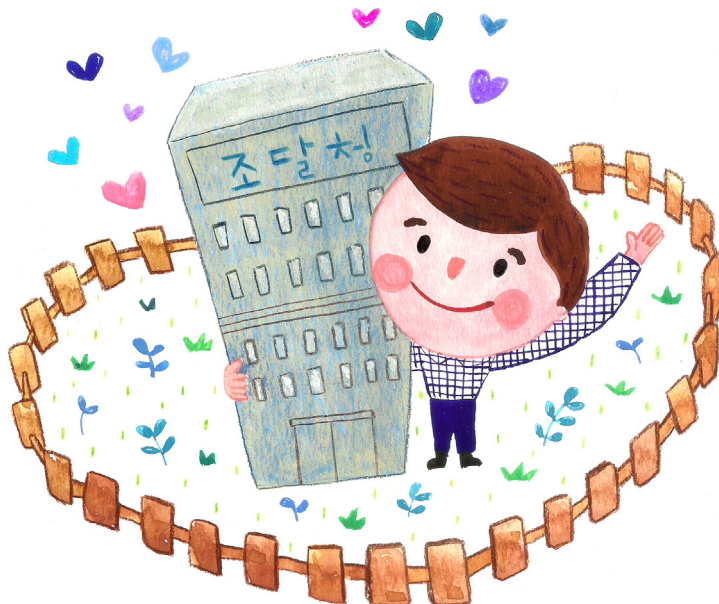
셋째, 사소한 것부터 바뀌었습니다.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음료수, 간식 등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직무관련자가 가져온다면 되돌려 보내고 관련 취지를 설명하다보니 그러한 관행들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행위가 상호간 어색했지만 지금은 당연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결국, 청탁금지법은 나와 조직을 보호하는 울타리이고
나아가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넷째, 조달업무 특성에 맞는 사례를 통해 인식이 개선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다소 광범위하여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판단이 모호한 것도 있었으나 조달청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례, 그리고 직원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청탁금지법 질문광장'에 게시된 각종 정보 및 자료 등의 공유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자연스럽게 일상생활과 업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청탁금지법은 나와 조직을 보호하는 울타리이고 나아가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업무관련 제도도 투명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직장 내 청렴문화 분위기 확산 | 울산광역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되는 조직문화에 대하여 부서 내 변화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법 시행 초기에는 이런 거는 해도 **괜찮다, 아니다 등 감론을**박이 많았지만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정착화되어 가고 있고 공무원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차츰 사라지고 부담스러운 관행이 없어져 조직이 잘 돌아간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어 사회분위기 변화와 더불어 직장 분위기 또한 청렴문화 조성 형태로 변화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어 청렴문화가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차츰 사라지고
부담스러운 관행이 없어도 조직이 잘 돌아간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 1 각종 사회단체에서의 식사 제안이 사라졌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단체에서 업무 협의차 식사 제안이 들어오면 1~2번은 거절하지만 계속적인 제안에는 거절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서 객관적인 단체 평가가 수월해졌습니다.
- 2 더치페이 식사 분위기가 정착되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팀별로 부담해서 부서장을 모시던 관행에서 이제는 부서장님이 내거나 부서장을 포함한 더치페이 또는 정해진 한도 이내의 식사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 3 내부 행정 게시판에 언론인들의 경조사 게재가 사라졌습니다. 행정 게시판에 연합뉴스, 전국 뉴스 등을 올리면서 기자들이 언론사 간부급 경조사도 종종 올리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될 경우도 있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4 경조사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직위가 높은 분들의 자녀 결혼 등의 경우에 있어서 축의금을 과도하게 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이제는 정해진 한도가 있어 상호 간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 5 경기침체에 있는 화훼농가 돕기 이벤트를 개최하여 직원 간에는 무조건 선물을 할 수 없다는 잘못된 법해석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동료간의 승진, 전보 등의 축하 선물로 꽃을 보내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원들이 법 해석을 잘못하거나 선물은 하고 싶지만 오해받기 싫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무조건 선물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사이 또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보내는 꽃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된다는 것을 알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6 각종 민간단체에서 검증되지 않는 수상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의 명확한 해석으로 정중히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민간단체에서 기관장 또는 직원에게 시상금과 상패를 수상하겠다는 공문이 오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자체 기준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 서로 오해가 일어나지 않게 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 7 지금까지 인·허가 신청 관련 민원 관련 방문자들이 신속하고 원활한 인·허가 처리를 위하여 관례적으로 들고 왔던 음료수나 음식물 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음료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해왔던 청탁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지만 민원인들이 들고 오던 음료수는 청탁의 시작이었고, 그러한 짝을 없앴다고 하는 점은 민원인이나 관련 공무원들의 의식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고 봅니다.
- 8 소방 관련 업무 중 특별조사 또는 각종 검사 등으로 지적된 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청탁성 부탁이 자주 있었고, 지인의 부탁이라 매정하게 거절하기도 어려워 소방공무원이란 직위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어떠한 사안인지 담당 부서에 물어보기도 했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고 요즘은 이러한 청탁성 전화조차도 사라졌습니다.
- 9 업무 특성상 민간 용역 업체와 함께 생활하면서 야간 근무 시 저녁 및 야식 등을 먹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 식사비용 지불 시 직무연관성이 있고 없고,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터치페이 앱 사용으로 각자내기(터치페이)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 10 공무원 생활 중 여러 가지 일로 표창 등을 받거나 후보로 선정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 다른 방법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는 등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 경우가 생기곤 하였는데, 법 시행 이후엔 후보자 선정위원회를 열어 공정하게 선발하는 절차를 거칠 뿐만 아니라, 선정된 대상자도 관행적으로 점심을 산다던가 답례를 하는 등의 적폐가 사라져 공정 경쟁을 통해 조직 문화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난 새로운 청렴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점차적으로 각종 사회단체 또는 기업, 개인들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불어라 청렴바람 가득하라 청렴문화 | 경기 안산시

일명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청탁금지법이 작년 9월28일 시행되고 어느덧 6개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법 시행 이전에는 마치 모든 공무원이 법 시행이 되고나면 모두 청탁금지법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처럼 많은 걱정이 따르고 작은 것 하나에도 무척이나 예민하고 신경썼던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의 부패행위와 관련된 법들은 과거에도 수없이 많았지만 청탁금지법만큼 공무원들의 관심을 갖게 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이 시행되고 나니 처음의 기우와는 다르게 법에 대한 부정적 영향보다 공직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선 공직자들의 업무에 대하는 자세부터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이정도 짬이야", "뭐 늘 그렇게 해오던 건데 뭘" 이런 얘기들은 다시 한 번 되짚어서 생각하게 되고 "혹시 이것도 문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직장 상사들, 동료들, 주민들(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짐에 따라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신껏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청렴업무 담당자로서 공직사회의 이러한 변화는 한껏 반기지 않을 수가 없으며, 변화하는 우리시의 청렴문화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전체 공직사회에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아래는 우리시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외부 민간기관의 부정청탁 관행 근절

청탁금지법의 시행 후 우리부서에서 체감할 수 있었던 변화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 1 시에서 하는 대형 개발사업에 광고 압박이나 청탁 등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복합개발사업, ○○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시 언론사들의 광고 압박이나 청탁 등이 단 1건도 없던 것은 이를 방증합니다.
- 2 또한 과거에는 골프장 준공식 시 무료 시타권을 요구하거나 배포하는 것이 암묵적 관행이었으나, 이번 ○○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골프 아카데미) 준공식에는 무료 시타권의 요구 또는 배포가 일절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었던 접대와 청탁과 같은 관행이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행적 접대문화의 개선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자면 단연 접대문화가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외부 민간업체나 기관에서 내방할 때 업무담당자에게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 으레 음료나 간식 등을 준비하거나, 업무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식사 등을 대접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청탁금지법의 시행 후 이렇게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접대문화가 사라짐으로써 보다 공정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청탁금지법 이후, 업체와의 만남이 전보다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법 시행전에는 유관단체, 업무관련 업체에서 음료수, 소량의 간식을 가지고 오면 관행과 정으로 받아야 할지, 거절해야 할지 꽤나 난처했고, 간혹 받고 나서도 괜히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는데, 이제는 고민할 필요 없이 거절의 사유가 있어서 다행스럽습니다.
- 간혹 유관단체원들이 다른 이유 없이 작은 고마움의 표시를 거절한다고 정이 없다고 아쉬워하기도 하셔서 더욱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특히 공무원 뿐만 아니라 업체,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한 공직사회의 변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안 주고 안 받기를 실천하여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한테도 몇몇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의 변화를 예로 들자면

- 1 물품 계약 관련 업무나 인·허가 업무시 예전에는 민원인이 음료수를 사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음료수를 사오는 민원인도 없어졌고 직원들도 민원인이 음료수 사가지고 오신다고 하면 사 오지 않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 2 관공서 업무와 관련 있는 민원인이 친분을 내세워 점심을 먹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일체 사양하고 있으며 업무상 꼭 점심을 먹어야 할 경우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점심값을 공무원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한 민원행정 효율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민원업무가 공정해지고 보다 합리적으로 변화했다고 봅니다.

- ① 민원창구에서 제증명 발급하는 민원인이 주는 것은 감사하다고 주는 커피한잔도 실상은 부담스러웠는데 청탁금지법으로 민원인에게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가벼운 음료쯤이야라고 할 수 있지만 거절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또한 쉬운 제증명 발급이라고 해도 해당 법령이 까다로워 발급이 안되는 경우에도 음료 한 잔으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는데 법 시행 이후, 이러한 실랑이를 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 ② 퇴직 공무원 등 부서장과 안면이 있는 지인들이 찾아와 민원처리가 쉽고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청탁금지법으로 직원들에게 부탁하기 어려워 졌다’ 이야기하면 이해하고 다른 민원들과 같은 절차를 밟아 민원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대기 민원이 많을 때 먼저 처리해달라고 하면 난감했는데 지금은 다른 민원들처럼 대기하고 업무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사소한 변화가 민원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 ③ 민원을 접수해서 각 부서로 배분하다보면 다른 부서 직원들과도 친분을 쌓게 되어 아는 직원들이 많아지고 그 직원이 돌잔치나 환갑, 칠순의 행사를 알리는 경우 축의금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경조사 범위를 결혼이나 사망 등에 한정하여 알리고 축의금에 대한 한도도 정해져 있어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

저는 공사·용역 계약 업무 담당자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로 계약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계약 체결을 위해 내방 시, 친근감이나 감사의 표시로 사들고 오던 음료수, 떡, 빵 등 간식이 없어졌습니다.

언론 홍보 등 청탁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 사례 등을 접하면서 계약업체 내부적으로도 대가성이나 고의성이 있든 없든 커피 한 잔도 안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무심코, 관행처럼 받았던 식사접대 등을 받지 않다보니 계약 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었으며 또한,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여러 업체에게 기회를 주며 더욱 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었습니다.



접대성 경비(업무추진비) 삭감으로 건전재정

- ① 접대성 경비인 업무추진비를 10%가량 삭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의와 간담회, 각종 위원회 등은 오전11시에 개최되어 위원들과 점심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위원들에게 제공되던 간식은 물론 점심식사 제공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 각종 회의와 간담회는 점심시간을 피해 오전 10시나 오후 2시 이후를 잡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상록구청에서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10%가량 삭감해서 접대성 경비를 줄여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 ② 구내식당 이용이 많아졌습니다. 간담회나 회의 때에도 외부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찾아와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도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되어 서로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③ 상급자에게 하급자들이 접대하는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특히, 하급자들이 상급자에게 식사대접하는 경우는 상급자가 먼저 계산하거나 더치페이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난처해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로 불편한 자리는 피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학교 업무 개선 | 경북 교육청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체감한 가장 긍정적인 변화는 소규모학교에서의 업무 개선입니다. 우리는 경북 의성군이라는 농촌지역의 교육지원청입니다. 의성교육지원청은 의성지역 유치원, 초·중학교, 도서관 등 총 41개 기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기관 소속 초·중학교의 과반수는 단일학급으로 이루어진 소규모학교입니다. 농촌의 소규모학교는 저경력 교사의 비율이 높고,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행정실장으로서 행정실에 단독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기관에서는 소규모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 활동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을 통해 색다른 방식으로 소규모학교를 지원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우리기관이 겪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간 업무적, 심적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업무상 서로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음료수 한 상자, 과일 한 바구니 등을 선물하거나 접대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를 고민하는 잘못된 생각이 서로간의 소통을 방해하는 벽으로서 존재해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이러한 벽을 없애고 서로 개방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 ②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간 협력 활동이 강화되었습니다. 접대문화가 사라지자 우리기관 대 학교, 학교 대 학교 등 소통의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우리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소규모학교를 찾아가는 업무지원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주도하는 색다른 방법도 나타났습니다. 바로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한 정보공유와 협력입니다.

청탁금지법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마음에 거리낌을 주는
부탁을 부정청탁이라고 명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 초 우리기관과 소속 공립학교 및 도서관 등 관내 16개 기관에서 20명이 모여 학교업무를 분석하고, 감사사례를 연구하는 학습동아리를 구성했습니다. 참여자 과반수가 소규모학교 행정실장입니다. 월 1회 이상 모여서 학교행정업무를 분석하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소규모학교의 취약점을 스스로 개선하는 **생산성이 높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3 청렴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학습동아리에서도 6월 청렴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백일하고도 조금 더 지났는데 청탁금지법 관련 행사만 4회 실시할 정도로 청렴교육에 대한 수요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주요 빈발 질의응답 자료를 만들고,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관에서는 공직풍토개선TF팀을 구성하는 등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우리기관에서도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전화를 받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진 않을지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 4 교육수요자의 신뢰도가 제고되었습니다. 입학식, 상담주간, 스승의날, 체육대회 등 학교행사가 있을 때면 특히 학부모의 입장에서 관례적인 일들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교사는 교육수요자와의 관계에서 학생 평가를 담당하는 이해관계자로서 보다 명확한 거절의 명분을 얻었고, 교육수요자는 명확한 법적 제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을 통해 서로 부정청탁을 받지 않고, 받지 않을 것을 믿는 분위기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즐거운 변화가 많았습니다. 경조사 등 모호했던 사회상규에 대한 기준이 다소 명확해졌다는 것도 있지만, 청렴이라는 내 안의 양심을 지킬 든든한 방패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청렴은 나를 당당하게 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도 여러 제도가 있어왔지만, 청탁금지법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마음에 거리낌을 주는 부탁을 부정청탁이라고 명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탁이 두 번 이상 반복될 경우 신고해야 하는 절차 등 어쩌면 엄격하다고 말할지도 모를 이 법이 청렴행정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음을 공무원으로서 절감합니다.



청탁금지법 덕분에 행복해진 나의 삶

국방기술품질원

저는 자녀 둘을 가진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여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시행의 최대의 수혜자라고 생각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보다 더욱 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향응이 금지되는 사회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업무 외적인 일로 받는 스트레스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군수업체(이하 업체)에서 생산되는 군납식품에 대해 품질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체직원들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업무종료 후 빨리 귀가하여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업체 직원이 하는 통상적인 인사 '식사한번 하시지요'라는 말에 짜증이 나면서도 매번 거절하기 어렵고 난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남자 분들은 편한데 여자 분들은 식사도 한번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성 차별적인 말까지 들을 정도였습니다. 업체 직원은 통상적으로 기품원 직원과 식사 한번 정도는 해야지 본인의 사장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분위기이므로 기품원 직원과 식사 한번정도 해야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그러한 불편한 분위기가 사라져 공정한 업무 수행 뿐만 아니라 개인 사생활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본인과 업체와의 업무 수행 중 미묘한 입장차이가 발생 할 때, 업체 직원들이 기품원의 타 직원 또는 외부기관을 통해 저의 업무에 간섭 하는 경우가 있어, 업무 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이러한 청탁이 사라져 본연의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능력과 노력이 인정받는 분위기가 조성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승진을 위해 부서장들과 식사라도 한 번 해서 소위 “눈 도장”을 찍어야만 좋은 인사과과를 통해 승진에 유리했었지만, 여자인 저는 퇴근 후 가사를 돌 봐야 하는 입장에서 금전적인 면은

청탁금지법이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같이
정이 많은 나라에서 이런 걸 하면 어떻게 하냐고들 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이고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승진이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원들이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함에 따라 제가 기품원 여직원으로서 최초로 '16년 말 승진심사에서 “책임”으로 승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라고 생각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 할 따름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같이 정이 많은 나라에서 이런 걸 하면 어떻게 하냐고들 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청탁이 완전히 사라지는 바른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 | 한국전기안전공사

저는 감사실 근무자로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법 시행을 계기로 ‘청렴한 조직문화’와 ‘공정한 업무처리’가 조직 내에 정착되어 구성원 모두에게 내재화되는 등 긍정적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 시행을 계기로 '17. 1월 공사 감사실 하부조직으로 '청렴감찰팀'이 신설되었고, 제가 팀장을 맡아 공사의 감사실장과 함께 전국 지역본부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부설교육원에 청탁금지법 정규 교육과정을 만들어 매월 3회 이상 출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면·소통 과정에서 법령에 대한 직원들의 깊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동안 공사 내에서 별다른 의식 없이 행해져 왔던 행위와 관행이 '부정청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과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 공사의 업무처리가 공정해지고 조직구성원의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또한 높아지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전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하며, 그동안 제가 느낀 의미있는 변화를 '공사의 업무 측면', '조직문화 측면', '개인의 생활 측면'으로 나누어 진솔하게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업무 측면의 변화

- 1 공사의 주요업무인 '전기설비 안전검사' 관련 부정청탁 여지가 없어져, 엄정한 전기설비 검사가 촉진됨으로써 불량 전기설비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감소되었고, 민원인과 직원들의 부담도 크게 경감되었습니다.

대면·소통 과정에서 법령에 대한 직원들의 깊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동안 공사 내에서 별다른 의식 없이 행해져 왔던 행위와 관행이 '부정청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과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를 위한 방문고객이 가져오는 음료수·커피 등은 물론, ‘전기설비 안전검사’ 직후 이어질 수 있는 고객과의 식사 자리를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는 명분과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는 검사결과에 대한 고객의 민원을 우려하여 고객의 식사 제의를 과감히 뿌리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고, 결국 함께 식사를 하더라도 서로 비용을 지불하려는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촌극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검사종료 시점이 점심식사 또는 저녁식사 시간일 경우, 검사자에게 식사를 제공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고객의 부담 또한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법 시행을 계기로 고객은 물론 공사의 현장업무 종사자가 느껴왔던 심적인 부담감이 해소되었고, 아울러 고객과의 가벼운 식사자리에서 오갈 수 있는 부적절한 대화 또는 검사결과에 대한 청탁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이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행해졌던 이같은 행위가 형사처벌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이해관계자 모두가 인식함으로써, 부정청탁이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식사제공 등 피검사자(고객)가 느끼는 심적부담이 해소되면서 공사의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또한 증진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2 공사의 구매·계약, 홍보 등 제반 업무가 눈에 띄게 투명해졌습니다.

공사에서 추진하는 각종 구매·계약 관련자 및 공사의 제반 업무를 홍보하기 위한 신문기자 등과의 비공식적 만남·식사 행위 등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업무 관련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공사의 담당직원은 물론 외부 직무관련자의 부담 또한 경감되었습니다.

직무관련자와의 비공식적 만남 등을 규제하는 내부 행동강령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사는 물론 전 사회적으로 청탁금지법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청렴에 대한 화두를 제시함으로써,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키는 막대한 파급력을 보였으며,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변화를 촉진시켰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③ 공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간소화되었고, 관련 예산도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의 각종 행사 종료 후 참석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제공되었던 식사와 기념품 제공이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짐으로써, 행사절차가 간소화되고 불필요한 예산지출 또한 억제되어 경영효율이 증진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급기관 담당자 또는 타 기관 공직자와의 업무회의 시에도 불필요한 식사·음주 행위가 완전히 사라지는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있고, 부적절한 '갑을관계'도 해소되어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공사의 조직문화 측면의 변화

① 명절선물, 승진축하 선물에 대한 하급자의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는 승진, 인사고과(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명절 등 특정시기에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는 사례가 암암리에 발생했었지만, 청탁금지법이 수수금지 금품에 대한 가액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잔존해 있던 부적절한 조직문화가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② '상명하복'의 관료적 행태와 구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타 기관의 '법과 원칙을 위배한 상급자의 일방적 지시와,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하급자에 대한 의도적 괴롭힘' 사례가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로 보도됨에 따라, 그릇된 상명하복문화가 조직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조직문화를 황폐화시키는 것은 물론, 조직의 신뢰도 또한 한 번에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의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로써 상급자도 하급자에게 지시할 때,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게 되었고, 하급자 또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3 공사의 인사·감사·평가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조직 내 밀접한 직무관련자들 간의 식사 또는 사적 만남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부정청탁의 여지가 사라지면서 인사청탁, 징계 감경·무마를 위한 청탁, 평가·포상 관련 청탁이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승진·이동 등 인사발령 시기에 이루어졌던 청탁전화·술자리가 사라졌고, 감사처분을 경감하려는 시도는 물론, 각종 평가시 평가주관부서 담당자나 내·외부 평가위원에 대한 접촉행위 또한 모두 차단되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었습니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각종 청탁·부탁에도 담당자가 청탁금지법과 처벌조항을 근거로 엄정하게 거절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음은 물론입니다.

4 2차, 3차로 이어졌던 공사의 회식문화가 변했습니다.

회식을 주관하는 상급자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더치페이’ 방식이 확산되어 술자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회식이 1차로 종료되는 새로운 풍토**가 조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급자에 대한 의견·음주량 등이 중요시 되고 자칫 능력으로 간주되었던 구시대적 조직 문화가 사라지고, ‘업적과 역량’으로 평가하고 인정받는 ‘성과중심 보상’의 조직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아울러, 과도한 음주와 피로로 인한 업무태만 행태가 사라졌으며, 조직구성원과 그 가족들이 원하는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져 모두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변화

제가 청탁금지법 담당자로서 조직의 청렴감찰팀장이 되다 보니, 매사에 조심하고 술선수범하는 마음가짐이 체화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전문강사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권익위 질의와 내부 변호사 자문·업무교류 등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0회를 상회하는 사업소 순회설명회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사례를 두루 접하게 되면서, 직원들에게 정확하고 명쾌한 지침을 주기위해 늘 고민하게 되었고, 제 강의내용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국 60개 사업장에 2,7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청탁금지법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인으로서 업무에 임할 때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하게 되었으며, 한 치라도 불편한 대화가 오갈 수 있는 자리나 모임을 경계함은 물론 제 비용은 철저히 제가 지불하고 수건과 같은 사소한 선물도 완곡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피감사 조직의 상급자로부터 “너무 융통성 없고 정 없이 처신하는 것이 아니냐”는 원망도 듣지만, 저의 이러한 처신이 반복되고 법 취지에 대한 이해를 구하였더니 이제는 모두들 긍정적인 시선으로 저를 바라봐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의 제반 업무처리나 이해관계자와의 교류, 사적 사교모임까지 저에게 항상 물어보고 법령 저촉여부에 대한 상담요청 사례가 빈번해져, 저 또한 청탁금지법 담당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한번은 부설 교육원 강의가 마침 오후 12시에 끝나서 별 생각 없이 구내식당에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교육원에서는 교육생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함)

그런데 제 강의를 들은 직원 한 명이 저에게 “팀장님, 출장비 받고 오셨을 텐데, 여기서 식사하셔도 되나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나면서 부적절한 행동임을 시인했고, 바르게 지적해 준 직원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경솔하게 행동한 사실이 부끄러웠고, 강의를 위해 교육원에 자주 방문하는 사내강사(주로 간부급)들에게 이 내용을 전파하여 이제는 모두 금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한없이 부끄러운 사례이지만,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대다수의 직원들이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주시하고,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는 습관이 몸에 배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체감하며, 이 사례를 청탁금지법 강의 때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조직과 개인이 변화하고 있는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시다만, 시간이 갈수록 이같은 긍정적 변화가 '굴러가는 눈덩이' 처럼 커져서 더욱 깨끗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사회로 도약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에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는 병폐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관행을 법 제정을 통해 과감히 메스를 들어 환부를 제거하고, 청렴과 투명성에 대한 화두를 온 사회에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이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공사의 임직원은 물론 국민의 절대다수가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음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인지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법 시행에 따른 경기침체’ 주장과 같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검증되지 않은 일부의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고, 제도 홍보와 정착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 제정을 위한 권익위 여러분의 노력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한 관행적인 청탁 근절 | 인천국제공항공사

저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주변에서 보이는 공항 업무 관련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뚝뚝함을 느끼고 힘이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조금씩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업무와 주변에서 보여지는 변화에 대해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 이후로는 실제로 부탁이 왔을 때 당연하게 거절을 할 수가 있게 돼서
마음이 편했고 이미 법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 부탁하는 횟수도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항공사 관련 청탁이 사라졌습니다.

- 1 (항공사 예약 청탁) 인천공항에 근무를 하고 있고 항공사와 다양한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천공항에 근무한다고 하면 지인들은 비행기를 쉽게 예약할 수 있고 좋은 좌석을 지정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좋은 좌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비상구좌석, 일반석 중에 앞쪽 공간이 넓은 좌석 등을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기 위해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이런 부탁이 왔을 때 거절하기 보다는 생색이라도 내기 위해서 항공사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항공사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탁을 들어주곤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번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게 되고, 이 부탁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또 부탁이 오고 사실 거절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부탁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인도 있지만 업무상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탁을 했을 때 가능한 사람을 찾아서 부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민간기업이라 부정청탁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이후로는 실제로 부탁이 왔을 때 당연하게 거절을 할 수가 있게 돼서 마음이 편했고 이미 법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 부탁하는 횟수도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부탁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항공사의 경우도 자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부탁이 오는 경우 금품 제공에 해당한다고 하여 거절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항시설 이용 절차가 투명해졌습니다.

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항공사 서비스 외에도 의전 서비스나 주차장 이용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 2 (의전실 이용) 과거에는 의전실 이용대상자(장관급 이상)가 아니신 분들이 의전실 사용을 전화로 요청하실 때 관련 규칙(국토교통부령)을 사유로 불가능함을 안내해 드리면 과거에는 “버릇없다. 갑질하냐” 등의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설명하면 과거 보다 쉽게 이해해 주십니다.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전실 이용자 분들 중 항공사 단골 고객에 해당되어

항공사 라운지 승급 혜택(비즈니스→퍼스트클래스 라운지)을 항공사에서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스스로 거절하신다고 들었습니다.

- ③ (공항 주차장 이용) 주차장 담당부서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에는 지인 및 타부서 등에서 각종 주차장 이용 편의 부탁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신청 절차를 보다 시스템화(전산화, 문서화)하여 더욱더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양성화되었습니다.

- ④ (청렴 식당 오픈) 청사 구내식당(일반 식당) 옆에 프리미엄 메뉴 식당을 추가 오픈(10.4)하였습니다. 청렴 콘텐츠 공모전(방만경영 예방 아이디어 부문) 수상작으로 외부 식당에서의 부적절한 접대 근절,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다소 소원해 질 수 있는 내외부 고객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양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즉 회의 후 외부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회사내 식당에서 공사가 계약자, 협력사에게 제공을 하게 되어 접대를 받을 기회조차 근절을 하고 있습니다. 8천원~3만원 대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오픈 이후 이용객과 매출이 지속 증가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⑤ (청렴 카페 활성화) 신청사 오픈과 연계하여 청사 1층 구내 커피숍(Coffee port)을 확장 이전하고 커피숍 인근에 내외부 고객을 위한 회의 공간을 신설(Meeting Islands, 10여개 대중소 회의실 무상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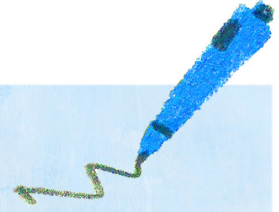
- 외부고객 접견시 음료를 공사에서 대접하며 투명한 회의(음료 선물 등 사절)

* 청사 로비에 선물반입 금지를 알리는 클린박스 운영 중('15년~)

- '17년 1분기 현재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25% 증가

계약자와의 업무도 편해지고 저녁시간이 생겼습니다.

- ⑥ 청탁금지법 시행 후 변화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서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이 느끼는 변화에 대해 직접 설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최근 권익위에서 제공한 청탁금지법 통계자료와 설문자료를 제공하여 통계자료에 대해 자체 교육을 하고 의식변화에 대한 설문을 3월 시행(289명) 하였고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청탁금지법 이후로 우리 공사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289명중 89% 인 258명이 변화가 있다고 응답
- 289명중 11% 인 31명은 변화가 없다고 응답
- (이미 다하고 있어서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가 다수, 기타 인적교류 단절, 법해석 모호 등)

2) 변화의 4가지 세부내용에 대한 사항으로

가. 청탁금지법 이후 우리의 회사정책에 관해 일어난 변화를 어떻게 평가?

긍정적: 90% 보통: 10% 부정적: 0%

나. 청탁금지법 이후 우리의 거래관계에 관해 일어난 변화를 어떻게 평가?

긍정적: 94% 보통: 5% 부정적: 0%

다. 청탁금지법 이후 우리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해 일어난 변화를 어떻게 평가?

긍정적: 96% 보통: 4% 부정적: 0%

라. 청탁금지법 이후 우리의 공정한 경쟁에 관해 일어난 변화를 어떻게 평가?

긍정적: 91% 보통: 9% 부정적: 0%

3) 긍정적 변화로 나왔던 직원들의 의견입니다.

- 불필요한 계약자와의 오해를 예방하려는 임직원들의 노력이 보임
 - 각자내기 문화 정착, 접대문화가 사라짐, 회사가 점점더 청렴해진다.
- 상호 수평적인 문화와 예의 존중하고 협력관계가 긍정적으로 조성
- 협력사 또는 외부 업체 방문시 불필요한 기념품을 주고 받는 관행 및 회의 후 식사등 서로 부담되는 절차가 사라짐
- 집행기준이 명확해졌고 불필요한 접대 비용이 줄어듦
 - 음식점의 메뉴가격이 합리적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 이용부담을 덜어주어서 좋다.

'16.9.28 법시행전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많은 교육들을 시행하였고 실제 법이 시행된 후 직원들이 체감한 사항을 설문을 통해서 보니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있음을 알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사회가 많이 투명해질 거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애정법'이 된 사유 | 국방기술품질원

저는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감사실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번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체감변화 사례를 전 직원으로부터 사례를 수집한 결과 아래와 같은 공통된 의식 변화를 파악 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탁금지법은 애매한 사항을 확실히 정해주는 법으로서 “애정법”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첫째, 민원인과 동일목적으로 출장시 과거에는 민원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교통비 분담을 할려고 하면 민원인의 거부로 인해 교통비에 상당하는 식사 또는 차량에 기름 주유시 기름 값 대납을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정확히 1/n이 되기 어려워 항상 뒷맛이 개운하지 않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직무의 직접적인 유관자와의 금지행동 수칙에 따라 동일목적으로 출장시에 처음부터 출발을 달리하여 목적지에서 만나 업무 수행 하는 별도행동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원인과 동행 출장시 애매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고민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감사실의 지침 :가급적이면 별도 행동을 하고 불가피하게 동행을 하더라도 차량 감가상각비까지 정확하게 1/n 계산)

둘째, 업무상 민원인의 회사 또는 사무실 방문시 민원인이 기품원 직원에게 손님이라면서 내놓는 차와 다과 등을 먹어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일체의 다과를 거절하게 되고, 민원인도 이해를 하여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애매한 사항을 확실히 정해준 청탁금지법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실 지침 :가급적 민원인 회사 방문 시 다과를 먹지 말 것을 추천함)

청탁금지법을 핑계로 웃으면서 쉽게 거절할 수 있어
청탁금지법이아말로 “애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품원 직원이 업무 수행 완료 후 감사실에서 취약업무에 대해 해피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 일부 민원인이 인정을 이유로 식사를 제의하곤 하였으나, 청탁금지법이 시행 된 후에는 청탁이나 접대가 없어도 민원처리가 잘 이루어져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기 사례 외에 많은 유사사례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기관의 직원들이 민원인과의 업무 수행과정 중에 식사, 교통편의, 다과 제공 등 애매한 사항에 대해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하였지만, 청탁금지법을 핑계로 웃으면서 쉽게 거절할 수 있어 **청탁금지법이아말로 "애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비정상적 관행 청산

부산교통공사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라고 느끼는 점은 누구나 관행적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비정상적 업무처리 방식이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행태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변화 중 우리공사 직원들이 느끼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우리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기관으로 2016년 기준 계약건수가 1,634건(2,821억)에 이를 만큼 많은 분야에서 민간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위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관계자들이 계약당사자로 선정되기 위해 계약담당자에게 식사접대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관행상 또는 인사치레라는 이유로 묵인되거나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 거절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직원들의 인식변화와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김에 따라 직무관련 업체와의 사적식사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 두번째로 공직자 대상 식사, 선물의 상한액을 법에서 명확히 정함으로써 기관간 업무협약, 출장 및 각종 행사개최시 고민했던 선물구입, 식비규모 등 부수적 업무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경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사에 대한 예산, 인사 등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처직원의 경조사 발생시 부조를 해야 할지 또는 얼마나 해야할지에 대한 고민과 부담을 항상 가지고 있었으나,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조 대상, 금액 등을 법에서 정하는 기준내에서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피감기관의 입장에서 감사에 대한 부담이 줄었고 오히려 감사기관에서 조그만 편의제공도 극구 만류하는 감사장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청렴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감사실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피감기관은 감사기관에 비해 '을'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감사관이 필요로 하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고 그것이 수감기관의 예의라고도 생각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감사기간 중 감사기관과 피감기관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 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일체의 편의제공이 금지됨**에 따라 피감기관의 입장에서 감사에 대한 부담이 줄었고 오히려 감사기관에서 조그만 편의제공도 극구 만류하는 감사장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과거에 당연시 되었던 관행들도 변화되어 가야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부산교통공사 임직원들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청렴한 업무처리로 소통과 신뢰도 향상

한국철도공사

안전한 철도의 정시운행을 담당하는 코레일은 국민들이 흔히들 알고 있는 역직원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및 철도차량을 관리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직원들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수백개의 협력업체와 상시 업무접촉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짧게는 몇주일부터 길게는 몇 년까지 유지되다보니 업무를 떠나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등 한국인 특유의 정문화가 생겨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과거 온정주의 문화의 영향에 따라 공사구분의 곤란함이 발생할 수 있었던 소소한 부분에서부터 작지만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레일의 변화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퇴직한지 오래된 분들의 전화가 가끔은 오지만, 「청탁금지법」에 따라
어떤 것도 말해줄 수 없고, 전화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임을 알려드리면
선배님들도 별 말없이 전화를 끊습니다.

1 협력업체들이 사무실에 방문하면서 사오던 음료수 등의 선물이 없어졌고 간혹 발생하던 경우도 청탁금지법을 명분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설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실은 각종 협력업체 직원들의 방문이 잦은 공간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정서상 남의 사무실에 방문을 할 때에는 의례적으로 빈손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관행 때문에 협력업체 직원들은 간단한 음료수부터 작은 선물까지도 들고 찾아오곤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받을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기존에는 코레일 내부적으로 사무실로 들어오는 선물을 회수하면 청렴점수에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고, 음료수 같은 경우엔 받지 않으려하면 들고 온 업체 직원도 얼굴이 붉어지며, 무안해하곤 했던 상황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서로가 작은 음료수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게 되었고, 법내용에 대해 이미 **상호간 충분히 공유**하고 있던터라 업무상 사무실에 방문하는 업체들과의 불편한 부담감이 없어졌습니다.

2 철도가 안전하게 다니기 위해서는 철도선로의 이상유무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정기적으로 해야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구간만을 따로 떼어서 공사직원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외주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운행 안전관리자를 두어 작업 중 열차운행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 전기선에 의한 감전방지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성격상 철도업무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여러분야별 업무협의를 등의 전문적 성격이 있다보니 외주업체에서는 코레일을 퇴직한 경험자를 우대하여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이유로, 과거 코레일에서 근무 후 퇴직한 선배들이 외주업체에 안전관리자로 재취업하여 우리공사 담당 사무실에 찾아와 작업협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끔 이럴때면 담당직원들과 일면이 있다거나 또는 과거 같이 근무했던 선배라는 인연으로 아쉬운 부탁을 하거나 또는 업무협의를 보이지 않는 소소한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경우가 간혹있었습니다. 위계질서를 중요시하고 온정주의가 만연한 우리나라 사회에서 선배들의 도움이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간단한 경우라면 선배라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도움을 드리게 되고 이런 것이 누적되다 보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는 업무분야에서도 온정주의로 접근하여 해결할 개연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명분으로 하여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제로도 모 선배님께서는 앞으로는 코레일

어느 사무실을 찾아가시더라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으시게 될 거라고 말씀드린 경험도 있습니다. 나중에 우연히 그 선배님을 뵈 기회가 있었는데 외부업체들도 코레일은 타협이 없다는 걸 인지하고, 원칙대로 공사를 시행하니, 작업능률도 오르고 업무성과도 좋아져 발주처인 코레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하시며, 이제는 코레일측의 명백한 오류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오히려 외부업체에서도 코레일 눈치안보고 몇몇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수 있게되어 투명하고 정당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서운한 눈치였지만 예전 ‘좋은게 좋은거’라는 문화가 오늘날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안전 불감증을 야기시킨 암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도의 안전관련 업무에 있어서 만큼은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철도역사내 일부 공간 또는 유휴부지등을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대도시에 위치한 대형역사 주변은 그 지역의 문화와 교통의 중심지로 많은 유동인구를 확보하고 있어, 최신의 트렌드에 맞는 적합한 사업아이템만 보유하고 있다면 역사 근처의 상업행위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코레일의 임대 및 개발계획에 대해서 민간사업자들의 관심과 정보에 대한 요청은 매우 높은편이고, 코레일에서 사업공고가 나면 당연히 많은 민간 사업자들이 입찰에 응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절차는 임대부지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공개입찰 공고를 하며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공기관의 모든 입찰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지만, 첫 번째 과정인 계획수립에서 해당 개발지의 용도 결정 등에 외부 입김이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역에 15평 정도의 신규매장을 개발하기로 하고 계획을 수립하던 중 어느날 느닷없이 퇴직한 선배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역에 매장을 만든다며?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서 사업을 해봤으면 하는데 **가능할까?**” **전화를 받은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계획을 어떻게 알았지?’ 그리곤 선배님께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도 마치지 않았고, 진행여부도 모릅니다.”라고 정중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렇듯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는 인맥을 이용한 사전접촉이 간혹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이러한 사례는 없어 졌습니다. 과거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전관예우, 인맥 등을 이용한 정보 취득이 이제는 불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 매체를 통해 알게 된 것이 그 이유라 생각합니다. 청탁금지법 교육을 시행하면서 모든 직원들이 관련 법·규정을 숙지하였고, 또한 교육을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퇴직을 하다 보니 퇴직하신 분들이 이제는 아예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퇴직한지 오래된 분들의 전화가 가끔은 오지만, 청탁금지법에 따라 어떤 것도 말해줄 수 없고, 전화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임을 알려드리면 선배님들도 별 말없이 전화를 끊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실물경기가 위축되고, 일부에서는 힘들어 한다는 기사가 쏟아집니다만, 청탁금지법으로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연·지연·혈연의 부정의 꼬리를 끊고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면, 여기서 얻어지는 사회적·국가적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청탁금지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업장 관계자와 공단 직원사이에 청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형식이 아닌 문화로서 정착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제가 최근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바를 다음과 같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공단에 방문하는 민원인, 사업장 관계자 등이 간혹 음료·다과 등을 가져왔으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청사 출입 시 청사 관계자가 사무실에 반입할 수 없도록 별도 보관하고, 민원인이 돌아갈 때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가져오는 음료·다과 등을 거절하기 쉽지 않았으나, 법 시행 이후 민원인에게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 상호 불쾌한 감정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민원인이 가지는 공단의 이미지도 향상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공단으로 문서 또는 서류를 제출할 때 민원인의 직접 방문을 방지하도록 가능한 기관 E-MAIL을 활용하여 접수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 2 국고보조금 사업, 산업안전 관련 규제업무(심사, 검사 등) 등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할 때 '청렴의무 이행 서약서'를 공단 담당자와 사업장 관계자간 상호 서약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 시행 이전에는 다소 형식적으로 서명을 하였으나, 시행 이후에는 사업장 관계자가 본 취지를 공감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며, 청렴에 대해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3 심사,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청탁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통상 사업장에 좋지 않은 판정이나 점검결과에 대해 무마해달라는 청탁이 간혹 있었으나, 이러한 일들이 없어지면서 업무가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상 사업장에 좋지 않은 판정이나 점검결과에 대해 무마해달라는 청탁이 간혹 있었으나, 이러한 일들이 없어지면서 업무가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4 사업장에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식사시간이 되어 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식대를 계산하면 사업장에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언짢아했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상당 부분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장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식사시간대를 피함으로써 금지된 물품 등의 수수기회를 최소화하고, 불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5 최근 공단에서는 기관장과 고위직이 한자리에 모여 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기관장이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올해는 좀 더 청렴한 공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6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더치페이 문화**에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장 관계자는 ‘아직도 다소 어색한 부분은 있지만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불필요한 관습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고 있고, 제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불편한 관행들이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선 진료 및 먼저 입원을 위한 금품수수 관행 근절 | 전북대학교병원

지역거점병원인 국립대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피부에 가장 먼저 와 닿는 변화가 우선 진료와 먼저 입원을 위한 금품수수 관행이 아래 적시한 내용과 같이 근절되었다는 것입니다.

- 1 우선 환자나 환자보호자 등이 가져오는 선물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환자나 환자보호자 등이 진료를 받아야하는 경우 의료진과의 친분으로 진료일정을 정상적인 대기순번보다 앞당기거나 당일진료가 가능하도록 배려를 받으면 고마움의 성의표시를 하고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미풍양속 상 거절이 쉽지 않았고 또한 거절한다 해도 놓고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이러한 행위들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정중하고도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거절이 자연스럽게 정착되어갔습니다. 또한 원내 시선이 자주 가는 외래 및 병동 등 주요 장소에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려 '**성원과 격려의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는 내용과 '주기 전 30초, 받기 전 30초의 생각'을 담은 홍보용 배너를 비치함으로써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2 병동으로 환자나 환자보호자 등이 가져오는 선물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 또한 생겼습니다. 응급실로 내원하여 병실로 먼저 입원할 수 있도록 청탁하기 위해 선물을 건네거나 특히 장기입원 환자의 경우 면회객들이 가져오는 선물이 상당한 경우가 많고 자연스레 자주 접하게 되는 간호사, 주치의 등 의료진들에게 편의 등을 이유로 부탁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병실을 공유하는 다른 환자나 보호자들의 시선을 의식해야하고 선물을 건넨 특정 환자에 대한 마음도 부담스러워지는 것은 당연지사이기에 거절하기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다행히도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고마움의 작은 선물도 주고받는 사람이 모두
 처벌받을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정중하고도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거절이 자연스럽게 정착되어갔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설명해드리고 양쪽 모두 위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이해를 부탁하면서 상당부분
 유사사례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3 더불어 청탁방지담당관인 감사실장이 임직원행동강령책임관과 공익신고책임관을 겸함으로써
 임직원이 궁금한 사항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고 유선전화 문의 등 다양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함으로써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이러한 문화를
 더욱 확고히 정착시키고 의지를 대·내외 표방하고자 전 임직원이 모여 청렴서약식을 거행하여
 청렴선서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 투명·공정한 학교 문화 조성 | 경북대학교

1 학교와 업체(급식, 공사 등 관련 업체)와의 청렴한 관계 정착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6개월, 이제는 학교 현장에서 그 어떤 부당한 거래가 일어나지 않음을 실감합니다. 그간 학교 현장은 학교 공사, 방과 후 학교 업체 선정, 급식 업체 선정 등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업체와의 계약에 있어서 불편한 관계가 많아서 오히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져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어 훨씬 더 일하기 편해졌습니다.

2 교사와 학부모의 만족도 증가

예전부터 학교와 교사는 **불법 찬조금과 촌지 근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촌지 수수에 대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혹을 받곤 했습니다. 몇몇 사람에게 국한된 일이거나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한 번씩 보도되는 기사로 인해 마치 모든 교사가 불법 찬조금과 촌지를 받는 것으로 매도되는 일이 많아 교사로서 참 언짢았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학부모님들께 수시로 안내하고 교육하고 홍보함으로써 학교에 오실 때 부담 없이 오는 것이 정착되어 학부모님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교사들도 학부모님의 방문이 부담스럽거나 꺼끄럽지 않아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3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 향상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학생으로부터 작은 음료수 하나도 받지 않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도 없애는 게 아닌가하는 비판적인 면도 많았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용돈을 아껴 감사의 마음을 담아 건네는 작은 정성까지도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 '인정'을 중시하는 한국적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인정'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없어져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롤 모델인 교사가 청렴에 있어서는
좋은 귀감이 되고 있어서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교사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교사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롤 모델인 교사가 청렴에 있어서는 좋은 귀감이 되고 있어서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아름다운 이야기

| 청탁금지법 제강변화 우수사례집 |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Tel. 044)200-7704

www.acrc.go.kr

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아름다운 이야기

| 청탁금지법 체감변화 우수사례집 |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T. 044-200-7704 www.acrc.go.kr